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
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연철흙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11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충청북도 국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방연마스크 비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관련기관,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대부분의 화재로 인한 사망은 화염에 의한 소사보다는 다량의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(窒息)가 큰 비율을 차지함.

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피로 유독가스 흡입량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확산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일정 시간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음.

- 이에 따라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,

- 경기, 인천, 제주 및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함.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.
-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5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는 방연마스크의 보급·비치 확대,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입법예고('21.10.21. ~ '21.10.2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관부서에서는 비치장소, 비치량,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사항임.